

의안번호	제 8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5일

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5일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 보건복지국 소관 >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출연기관	소관부서	출연내역	예정금액	비고
	2개 기관			2,096	
1	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	복지정책과	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	1,936	
2	충북인재양성재단	보건정책과	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160	

①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(설립 예정)¹⁾ 출연금 : 1,936백만원

○ 출연목적

-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 부문 역할 확대
-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·운영

○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

출연내역	예정금액	재원	비고
합 계	1,936백만원	국비 50%, 도비 50%	
사회서비스원 인건비	856백만원		
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	1,080백만원		

1)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특수법인

○ 기대효과

- 공공성·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②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: 160백만원

○ 출연목적

-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하여 설립('08. 2월)된 기관으로,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.
- 최근 청주·충주의료원 간호사 이직(부족)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을 위하여 간호대학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, 신규 간호인력 확보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.

○ 출연 예정금액 : 160백만원

○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
○ 기대효과

-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, 재활병동 운영 등 미충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여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5. 기타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복지정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복지보훈팀	서동경	우영미	박선경	3012

기관명	(설립 예정)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	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(이사장) : 미정 ○ 설립계획(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(북대동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) - 규모 : 3개팀 20명 - 기관성격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법인 - 주된사업 : 민간 제공기관 지원, 사회서비스 연구, 긴급·틈새돌봄지원 등 						
출연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1,936백만원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						
	구 분	2022년 예산액 (출연액)	2023년 요구액	재원별			
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기본재산	100	-	-				
사회서비스원 설치비	500	-	-				
사회서비스원 운영비	960	1,936	1,936	968	968		
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,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 ○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 지원 필요 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 - 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		
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, 시군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○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: 해당없음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: 해당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노인 및 1인 가구,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로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향상을 위한 공공역할을 강화하고, 시군이 보유한 자원과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치·운영 필요
- 이에,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 연구,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, 2022년 3월 보건복지부의 ‘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’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
-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특수법인(사회서비스원)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내역	2022년 예산액(최종) (C)	2023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(B-C)
합계	-	-	1,936	1,936	376
기본재산	100				△100
사회서비스원 설치비	500				△500
사회서비스원 운영비	960		1,936	1,936	976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자출연 기관현황

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(안)

□ 설립개요

- 설립형태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법인
- 설립시기 : 2022년 11월 설립 예정
- 주사무소 :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(복대동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)
- 기본재산 : 도비 1억원 출연
- 예산규모 : 운영비 年 19억원(국비 50%, 도비 50%), 설치비 5억원(1회, 국비 100%)
- 조 직 : 3개팀 20명
- 사업구성
 -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등 유사돌봄서비스 연계
 -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·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
 - 중복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

□ 세부 추진방안(기능별)

시 군 격 차 해 소

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·기관 및 사업 수탁 운영

- 법인 부족, 민간수탁 기피 등으로 위탁추진에 난항을 겪는 시군 지원
- 취약계층 학대피해보호기관 등 공적책임이 높은 위탁기관 수탁 운영

② 차별화된 긴급돌봄 및 유사돌봄서비스 연계 지원

- 차별화된 긴급돌봄(코로나19, 갑작스런 질병·사고, 요양등급 판정 전 돌봄 등)
-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운영 등을 통한 인프라 취약 시군 지원
- 유사서비스(맞춤형돌봄,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)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화

서 비 스 품 질 향 상

③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·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(국정과제)

- (교육) 채용·근로계약·근로환경 등 인사·노무, 재무·회계 등 직무교육
- (컨설팅)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,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지원
- (안전관리)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소규모 수선 등

④ 중복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(국정과제)

- 사회서비스별 표준운영모델 개발·보급(중복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제시)
-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수립·시행,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방안 연구 등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	구분	출자	
주관부서	복지정책과		출연	1,936백만원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 필요
-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·운영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
-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
- 출연액 : 1,936백만원
- 주요내용 :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, 운영·사업비
- 인건비 856백만원, 운영·사업비 1,080백만원
- 출연근거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분담비율
합계	1,936		
사회서비스원 인건비	856	3,567천원×20명×12월=856백만원	국비 50%, 도비 50%
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	1,080	90,000천원×12월=1,080백만원	국비 50%, 도비 50%

□ 기대효과

- 공공성·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제한 및 구심적 역할 부재 우려
-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따른 국비 확보 차질

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시·도 사회서비스원(이하 "시·도 서비스원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설립한 시·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시·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) ① 시·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
 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
 -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
 - 4.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
 - 5.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·회계·법무·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·자문
 - 6.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
 - 7.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·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
 - 8.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
 - 9.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
 - 10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그 밖에 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30조(재원) 시·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·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2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공공의료팀	곽홍근	이경아	이경호	220-3152

기관명	충북인재양성재단					
출자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 사 장 : 김영환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 (주요사업) 장학사업, 인재양성사업 					
출자출연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160,000천원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천원)					
	구분	2022년 예산액	2023년 예산액*	재원별		
			계	도비출연금	인재양성재단	의료원
계	320,000	320,000	320,000	160,000	32,000	128,000
※ 재정부담 비율 : 도 50%, 인재양성재단 10%, 의료원 40%						
출자출연필요성	○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익적 기능 강화 및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※ 제8조(출연)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 					
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. ○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이 정원대비 부족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수급 방안이 필요함. ○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학과생에게 생활장학금 지원으로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함. ○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장학금 지원에 소요되는 출연금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 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인원 및 조직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

2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(경영평가)

- 경영목표 및 성과지표, 목표치 등 명확히 설정, 설정과정에 전 구성원 참여

○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
-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「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이 부족한 실정임
-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한 의무복무(2년)로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수행 기여
- 이에,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우수한 간호인력을 발굴하여 공공간호사를 육성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내역	2022년 예산액(최종) (C)	2023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상 지원	160,000	-	160,000	-	160,0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2-② 출자출연 기관현황

충북인재양성재단

설립근거	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				전화번호 : 043-224-0221 홈페이지 : www.chrcf.or.kr		
주요연혁	- '08. 2월 설립등기 - '17. 8월 국민교육발전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- '22. 7월 제5대 김영환 이사장 취임			기관형태	출연기관		
인원현황 ('22.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6명		5명		1명		
임원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임기		
	이사장	김○○	충청북도지사		재임기간		
	이사	윤○○	충청북도교육감		"		
	"	이○○	청주시장		"		
	"	조○○	충주시장		"		
	"	김○○	제천시장		"		
	"	최○○	보은군수		"		
	"	황○○	옥천군수		"		
	"	정○○	영동군수		"		
	"	이○○	증평군수		"		
	"	송○○	진천군수		"		
	"	송○○	괴산군수		"		
	"	조○○	음성군수		"		
	"	김○○	단양군수		"		
	"	조○○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	"		
	"	김○○	충청북도행정국장		"		
	"	이○○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"		
	"	홍○○	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		재임기간		
	"	이○○	충북대학교 교수		22.04.03. ~ 24.04.02.		
	"	오○○	대신정기화물 회장		22.04.19. ~ 24.04.18.		
	"	이○○	유진테크놀로지 대표		22.04.19. ~ 24.04.18.		
	"	임○○	前 충북여약사회 회장		22.05.14. ~ 24.05.13.		
	"	권○○	신한은행충북본부장		22.06.22. ~ 24.06.21.		
	"	조○○	청주병원 원장		21.03.08. ~ 23.03.07.		
	"	이○○	前 대성중학교 교장		21.03.08. ~ 23.03.07.		
	"	류○○	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		21.04.29. ~ 23.04.28.		
"	이○○	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장		22.06.22. ~ 24.06.21.			
"	정○○	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원장		22.06.22. ~ 24.06.21.			
감사	조○○	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		재임기간			
"	변○○	한빛회계법인사무소공인회계사		20.09.06. ~ 22.09.06.			
주요기능	-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(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및 각종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)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80,000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-	
최근3년 간 예산 현황(단위: 백만원)	연도	2020	2021	2022	재무현황 (백만원) '21.12.31기준	자산	81,569
		예산액	7,241	6,461		6,308	부채
	일반회계	지자체 지원액	650	686	710	자본	81,523
2021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3,066			2,073		993	

2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구분	출자	160백만원(도비)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	출연	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재학생 인재 양성
-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여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-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
- 총사업비 : 320백만원(출연금 160백만원)
- 주요내용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
 - 지원대상 : 간호학과 4학년 생활장학금 지원(1인 800만원/년, 40명)
- 출연근거 : 「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분담비율
운영재원 합계	320	8,000천원×40명 = 320백만원	100%
도 출연금	160	8,000천원×40명×50% = 160백만원	50%
충북인재양성재단	32	8,000천원×40명×10% = 32백만원	10%
청주·충주의료원	128	8,000천원×40명×40% = 128백만원	40%

□ 기대효과

-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간호사를 양성하여 도내 공공의료 인력자원으로 활용 가능
-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양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미승인 시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난함에 따라 간호사 충원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임.

지방재정법 및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4조(사업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2.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
5.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6.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
